

[별표1]

신 상 면 담(제33조관련)

가. 실시횟수

- 1차 감독자 : 월 1회(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월 2회)
- 2차 감독자 : 분기 1회(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월 1회)
- 3차 감독자 : 분기 1회(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)
- ※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: 형사 및 징계처벌자, 기율교육 이수자, 기타 결손가정출신자, 환자, 성격특이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나. 면담시기 및 방법

- 전입시, 휴가전후, 생일, 관혼상제, 기타 필요시 등 중점 실시
- 본인 직접면담 또는 동료, 의형제, 가족, 친지, 남녀친구 등을 통한 간접면담 방법 병행 실시

다. 면담부 기록관리

- 면담부는 면담자가 직접 기록 관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신상 비밀 보장
- 1, 2차 감독자는 소속대원 전원에 대하여 면담부 1부 공동기록 관리
- 3차 감독자는 자체 선정 또는 1, 2차 감독자에게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을 보고받아 면담부 기록 관리
- 면담자(감독자) 교체시 인계인수 철저
- 대원 전출시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
- 대원 전역시 근무부서에서 2년간 보관(소방공무원 채용으로 임용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담부 송부)후 폐기

라. 면담자

- 의무소방원 근무감독 책임자(1차 감독자 [119안전센터장](#) 또는 담당계장, 2차 감독자 담당과장, 3차 감독자 소방서장)